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130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9.12.0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sykang@hkcomm.co.kr

[삼덕통닭]

정 보 공 개 서

[(주)삼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삼덕]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60, 3층(대흥동, 스카이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1660-329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3144-786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3144-785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서류

[별첨1] 가맹금 예치신청서

[별첨2] 재무제표

[별첨3] 원부재료 리스트/주방집기 및 비품류/주방설비/가구/비품 및 판촉물/메뉴별 판매가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삼덕	삼덕통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60, 3층(대흥동, 스카이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10.13.	2021.10.13.	한경민	1660-3292	02-3144-7866
	법인등록번호	110111-8053152	사업자등록번호	278-88-0219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사내이사 (대표자)	한경민	삼덕통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60, 3층(대흥동, 스카이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경민	1660-3292	02-3144-7866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청년다방 외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60, 3층(대흥동, 스카이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경민	1666-4693	02-3144-7866
	법인등록번호		180111-0731728	사업자등록번호	621-81-86842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계열회사	(주)파란만찬	파란만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21-1, 1층(상수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경민	02-3144-7856	02-3144-7866
	법인등록번호		110111-6781416	사업자등록번호	570-86-01050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계열회사	(주)솔솔	솔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60, 3층(대흥동, 스카이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하경재	1668-4602	02-3144-7866
	법인등록번호		110111-7952339	사업자등록번호	362-81-02206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계열회사	(주)더뉴스탠다드	후토루 외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60, 4층(대흥동, 스카이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하경재	1668-4602	02-3144-7866
	법인등록번호		110111-8730908	사업자등록번호	333-81-0320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삼덕통닭	삼덕통닭	2023.01.03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길 74(삼덕동1가)	이성화
	(주)에스에이치	제주군이 칼국수	2023.03.07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23(삼덕동1가)	이성화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주)제주군이칼 국수	제주군이 칼국수	2023.06.21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42, 1층(종로1가)	이성화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삼덕통닭』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삼덕통닭	
상 호	삼덕통닭 ○○점	
상 표 (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416289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5196690000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3,558	4,500	29,058	0	-945	-941
2022년	12,783	12	12,771	0	-16,326	-16,287
2023년	287,820	61,993	225,826	603,826	213,938	213,055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 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한경민	사내이사 (대표자)	2022.03.07.~현재	(주)삼덕 사내이사	가맹사업 총괄
			2018.09.18.~현재	(주)한경기획 사내이사	
			2019.04.29.~현재	(주)파란만잔 사내이사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삼덕	가맹사업 경영	2023.01~현재	삼덕통닭(등록번호: 20191301)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가맹본부	(주)삼덕	가맹사업 경영	2023.03~2023.06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회사에 인도함	제주곤이칼국수(등록번호: 20215580)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가맹사업 경영	2015.04~현재	청년다방(등록번호:20150700)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가맹사업 경영	2017.01~현재	은화수식당(등록번호:20140160)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가맹사업 경영	2015.02~현재	심야식당 치치(등록번호:20150617)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가맹사업 경영	예정	호랭관치킨(등록번호:20212987)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가맹사업 경영	예정	무궁반점(등록번호:20221041)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가맹사업 경영	예정	수폴림(등록번호:20231353)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가맹사업 경영	2022.06~현재	룸의정석(등록번호:20213759)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가맹사업 경영	2022.06~현재	포골노래타운(등록번호:20213765)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가맹사업 경영	2022.06~현재	포차김선생(등록번호:20213766)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파란만잔	가맹사업 경영	2021.08.13.~현재	파란만잔(등록번호: 20211593)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솔솔	가맹사업 경영	2021.08.23.~현재	솔솔(등록번호: 2021188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더뉴스탠다드	가맹사업 경영	2022.07.14.~현재	후토루(등록번호:20212528)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더뉴스탠다드	가맹사업 경영	예정	카레왕자(등록번호:20212166)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더뉴스탠다드	가맹사업 경영	예정	타코랜드(등록번호:20212165)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계열회사	(주)더뉴스탠다드	가맹사업 경영	예정	천재짬뽕(등록번호:20212167)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계약에 따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할 권리	출원일자: 2017.10.17 등록일자: 2018.11.13	출원번호: 4020170130764 등록번호: 4014162890000	(주)에스에이치	2028.11.13. (2028.11.13.)
		출원일자: 2019.04.11 등록일자: 2019.09.09	출원번호: 4020190056465 등록번호: 4015196690000	(주)에스에이치	2029.09.09. (2029.09.09.)

※ 당사는 ㈜에스에이치로부터 “삼덕통닭” 상표사용허락을 받았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삼덕통닭] 을 시작한 날: 2019년 12월 22일

2. 『삼덕통닭』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삼덕통닭	삼덕통닭	이성화	2019.07.20.~2023.01.02.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4길 74(삼덕동1가)
(주)삼덕	삼덕통닭	한경민	2023.01.03.~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60, 3층(대흥동, 스카이빌딩)

3. 『삼덕통닭』 업종

영업표지	업종	
삼덕통닭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치킨 및 이에 부수하는 메뉴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삼덕통닭』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	4	1	6	5	1	19	19	-
서울	-	-	-	-	-	-	4	4	-
부산	-	-	-	-	-	-	-	-	-
대구	2	1	1	2	1	1	1	1	-
인천	-	-	-	-	-	-	2	2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4	4	-
강원	-	-	-	-	-	-	-	-	-
충북	2	2	-	3	3	-	5	5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2	2	-
경남	-	-	-	-	-	-	1	1	-
제주	-	-	-	-	-	-	-	-	-

※ 당사는 2023년 1월 (주)삼덕통닭으로부터 삼덕통닭 가맹사업을 인수하여 2021, 2022년도의 가맹점 및 직영점은 당사에게 양도한 (주)삼덕통닭의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삼덕통닭』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	1	1	-	1	4
2022	4	1	-	-	-	5
2023	5	14	-	-	-	19

6. 『삼덕통닭』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삼덕통닭]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삼덕	삼덕통닭	20191301	치킨	4/1	5/1	19/0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청년다방	20150700	분식	403/4	421/5	399/3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은화수식당	20140160	서양식	50/3	48/2	51/1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심야식당 치치	20150617	주점	28/3	26/3	23/3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호랭관치킨	20212987	치킨	-	-	-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룸의정석	20213759	주점	-	5/1	12/1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논다노래타운	20213765	기타서비스	-	4/1	8/1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포차김선생	20213766	주점	-	4/0	3/0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무궁반점	20221041	중식	0/1	0/0	0/0
계열회사	(주)한경기획	수풀림	20231353	주점	0/1	0/1	0/1
계열회사	(주)파란만찬	파란만찬	20211593	커피	5/1	18/0	42/0
계열회사	(주)솔솔	솔솔	20211882	한식	7/2	36/5	51/6
계열회사	(주)다뉴스탠다드	후토루	20212528	일식	-	1/0	19/0
계열회사	(주)다뉴스탠다드	카레왕자	20212166	기타외식	-	-	-
계열회사	(주)다뉴스탠다드	타코랜드	20212165	일식	-	-	-
계열회사	(주)다뉴스탠다드	천재짬뽕	20212167	중식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삼덕통닭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9	774,823	23,179	1,701,043	37,760	327,807	9,884	10개점 대상
서울	4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대구	1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2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충북	5	509,374	16,987	813,001	26,081	327,807	9,884	4개점 대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2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과 배달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이며 실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바로 전 사업연도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삼덕통닭』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삼덕통닭』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9개	39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삼덕통닭]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충청 포함 충청이남	(주)삼덕통닭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5길 89, 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성화	1600-2874	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2.08.17 ~ 계속	○	X	X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2023년]에 [삼덕통닭]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144,309	144,309	-	
광고	비공개	비공개	144,309	144,309	-	
판촉	비공개	비공개	-	-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삼덕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또는 개점일 중 빠른 날	
보험금액	예치가맹금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TV. 1.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참조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삼덕통닭]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상·하수도 및 화장실 공사, 외부공사 및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테이블벨, 음향시설, TV, 전기/가스 증설, 오픈행사, 인·허가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9,25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계약금 성격의 금전
교육비	5,500	계약 체결일	교육개시 전 계약해지	교육개시 전: 전액반환 교육개시 후: 반환하지 않음
개점마케팅비	2,750	계약 체결일	홍보 전 계약해지 시	홍보 집행 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일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종료 후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21,250
가맹비	11,000(부가세 포함)
교육비	5,500(부가세 포함)
개점마케팅비	2,750(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99㎡(30평)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비고
총계		102,880	3,429		
인테리어	협력업체	99 ㎡: 49,500	1,650	계약 또는 물품 입고 시	3.3㎡ ² 늘어날 때마다: 1,650천원씩 추가부담
	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시		330		매뉴얼제공비(정보제공에 따른 비용)
간판 및 내부사인	가맹본부	8,200	273		전면간판 1개, 선팅 등/기본 외 추가시 별도
주방설비 및 집기(비품)	협력업체	32,000	1,067		
가구	가맹본부	4,580	152		
비품 및 판촉물	가맹본부	1,100	37		매장 초도비품, 소모품, 홍보물 등
POS 기기	가맹본부	2,200			
태블릿 기기	협력업체	임대			대당 16.5천원, 매월 청구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별첨참조	5,300	177		각종 식자재 및 소모품
별도 비용	- 상.하수도 및 화장실 공사, 외부공사 및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음향시설, TV, 전기/가스증설, 진동벨, 오픈행사, 인.허가 등의 비용은 별도 - 지역에 따라 배송비, 파견비 등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귀 하 는 매뉴얼 제공비(정보제공과 디자인 검수에 대한 비용)로 3.3㎡당 일금 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 포함>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입지·출점 타당성 검토(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검토) → 지역지정→ 가 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 당사는 점포 선정과정에서 귀하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입지 선정이 지연되어 영입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삼덕통닭』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31] 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관리비 [로열티]	가맹본부	가맹점 매출액의 2.2%	익월 5일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 반환하지 않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10% 가맹점사업자: 90% / N	광고개시 전	광고개시 전	광고 시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N=총가맹점사업 자 수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행사별로 분담	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후	별도 공지	교육 전	교육 후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결정	교체보수 전 7일 이전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 11				
태블릿 사용료	협력업체	월 16.5				대당
자연이자	가맹본부	연 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갱신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삼덕통닭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으나, 양수인은 가맹계약 개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받은 양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과 자세한 절차는 「V. 7. 2)가맹점운영권의 양도」에 나와 있습니다.

○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당사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및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의 부담입니다.
- ② 귀하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당사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된 상품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당사는 출고가격으로 상환합니다.
- ③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계약 종결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계약 종결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삼덕통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	단위	공급가격 (원)		구분
			상한	하한	
별지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지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위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일부 가맹점(지사에서 관리) 거래에 대해서는 지사에서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2)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지 참조	기재된 제품 이외는 판매 불가 다만,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문의 : 당사 (1660-3292)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상품공급 중단 또는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원)	단위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 참조	당사가 정한 용량		서면으로 통지	지역 및 경영 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 및 이에 부수하는 메뉴 등을 가공, 판매하는 가맹사업	삼덕통닭	호랭관치킨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범위 이내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범위 이내의 지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점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통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삼덕통닭]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삼덕통닭]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의 가맹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또는 갱신시 계약기간: 2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삼덕통닭]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33]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1)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가맹점의 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주문한 상품의 대금결제를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시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2)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환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계약 해지 사유(2)]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양당사자의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제 44 조 제 2 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귀하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1개월 전에 당사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 ③ 당사의 서면승인을 받은 귀하의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양수인은 교육비, 개점 마케팅비, 계약이행보증금(양수도 당시의 교육비, 개점 마케팅비, 계약이행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의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가맹비, 교육비, 개점마케팅비, 계약이행보증금(양수도 당시의 가맹비, 교육비, 개점마케팅비, 계약이행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당사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 **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 포함]**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범위	절 차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함
대리 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업무 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삼덕통닭]의 직영점 및 각 가맹점사업자의 거점지역 내에서]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삼덕통닭]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 일반인에게 치킨 및 이에 부수하는 메뉴 등을 가공,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1660-329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삼덕통닭』의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1일 10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점하여야 함	문의: (1660-329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자율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삼덕통닭]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 활동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부담 외 전액	광고비의90% / 가맹점수=1개 가맹점 부담금	계약서에 의함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이벤트 행사 (전국 광고 행사)
가맹점 개별 광고 행사		가맹점 부담			가맹점 단독 광고 행사

※ 판촉 활동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 고
판촉 전체 행사	가맹점부담 외 전액	판촉비의90% / 가맹점수=1개 가맹점 부담금	계약서에 의함	명절 등 이벤트 판촉 행사 (전국 판촉 행사)
가맹점 개별 판 촉 행사		가맹점 부담		가맹점 단독 판 촉 행 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광고 디자인(전단지, 책자, 자석전단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판촉활동을 할 경우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당사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 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자점매입)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제36조(계약의 해지)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삼덕통닭]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금이십만원(₩200,000)**씩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이십만원(₩200,000)**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가맹점사업자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점사업자는 연 이율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을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2]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99㎡(3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	62일 내외	약 124,13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D-62	-

가맹계약 체결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가맹계약 체결 받은 경우 7일)이 지난 후에 가맹계약 체결, 이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함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
가맹금 예치	- 가맹비: 11,000 - 교육비: 5,500 - 개점마케팅비: 2,750 - 계약이행보증금: 2,000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21,25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점포계약	- 입지선정 및 상권조사 - 점포계약	10일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
실내외 공사착수 및 각종설비 설치	- 인테리어 공사	40일	49,500
	- 간판제작 및 내부사인		8,200
	- POS설치		2,200
	- 태블릿설치		임대
	- 주방기기/주방기물/집기 설치		32,000
	- 가 구		4,580
교육 실시	- 개점 전 점포운영교육 및 위생교육 ※ 실내외 공사 기간에 동시 진행	5일	-
초도물품 입고	-초도상품(각종 식자재 등)	2일	5,300
	-초도비품 및 소모품 등		1,10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 및 소요비용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 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지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	---------	----	------	----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삼덕통닭]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삼덕통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비 고
신규 교육	7일	5,500	최초 계약시 필수적으로 이수 개점전: 7일
수시 교육	1일 이상	가맹점사업자: 실비 부담	필요시 이수
특별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가맹점사업자 100% 부담	요청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개점 3일 전까지 개점 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서 제11조에 따라 개점이 불가합니다.
- ※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660-329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2]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3] <원부재료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거래형태가 권장인 품목도 해당 품목 사용은 강제입니다.
- 귀하가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물품 외에도 당사의 Brand 및 Logo가 새겨진 물품(공산품 등)과 당사의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물이나 판촉물은 당사가 직접 공급하거나 당사가 지정한 거래처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품 및 판촉물>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거래 상대방은 권장이나 해당 품목 사용은 강제입니다.

<주방집기 및 설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거래 상대방은 권장이나 해당 품목 사용은 강제입니다.

<가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거래 상대방은 권장이나 해당 품목 사용은 강제입니다.

<비품 및 판촉물>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시장

<메뉴별 판매가격>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	위반시 책임	비고
삼덕통닭 후라이드(빠)	18,000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양념통닭(빠)	19,000		
간장통닭(빠)	19,000		
꿀닭(빠)	20,000		
삼미통닭(빠)	20,000		
삼덕통닭 후라이드 순살 한마리	19,000		
삼덕통닭 후라이드 순살 반마리	10,500		
양념통닭 순살 한마리	20,000		
양념통닭 순살 반마리	11,000		
간장통닭 순살 한마리	20,000		
간장통닭 순살 반마리	11,000		
꿀닭 순살 한마리	22,000		
꿀닭 순살 반마리	12,000		
삼미통닭 순살 한마리	22,000		
삼미통닭 순살 반마리	12,000		
파닭 순살 후라이드	21,000		
파닭 순살 간장/양념	21,500		
파닭 순살 삼미	23,000		
어니언통닭 순살 한마리	22,000		
어니언통닭 순살 반마리	12,000		
청양마요통닭 순살 한마리	22,000		
청양마요통닭 순살 반마리	12,000		
산더미새우튀김 50P	19,000		
산더미새우튀김 25P	10,000		
뽕집튀김	11,500		
오명탕	12,000		
가마솥닭발	16,000		
가마솥 순살닭도리탕 한마리	22,000		
가마솥 순살닭도리탕 반마리	14,000		
치밥	6,000		
주먹밥	3,000		
청양토핑주먹밥	4,000		
참치토핑주먹밥	4,000		
삼덕떡볶이	5,000		
매콤라면	4,000		
당면사리/라면사리	1,000		
간장/양념추가	1,000		
공기밥	1,000		
파채 소스 추가	1,000		
테라 500CC	4,500		
테라 1,750CC	14,000		
과일생맥주(자몽/레몬/파인애플)	5,000		
꿀맥	5,000		
카스/테라	5,500		
새로/참이슬/처음처럼/진로	5,500		
청하	6,500		
별빛청하	6,500		
한라산21	7,000		
콜라/제로콜라	2,000		
사이다/탐스(오렌지)	2,000		